

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		
	대표자	전자우편		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		
신청범위	(필요시 별지 사용)			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청인

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

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, 인력, 시험 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1부 3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·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 4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서류 1부 5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	수수료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
국가기술표준원장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)	

